

인권정보자료실
CPb1.98

2000

조사요원

직무교과교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모

인권정보자료실
CPb1.98

조사요원 직무교과교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600

조사방법 주제고고학

사회학적

- { 1. 설문조사법 9. 二
- { 2. 면접법.
- { 3. 작은조사법 10. 一
등 ~~행복한~~ 사회조사 방법. 痘. 烟 등에
대한 연구.

* 社会學的 調査方法 會考
* 社会學的 調査方法 會考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구동위원회

법률학회 학술대회

목 차

1. 인간의 존엄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양승규 위원장)	1
2. 법 의 학(이윤성 교수)	11
3. 공직윤리(문덕형 상임위원)	25
4. 의문사 사건의 이해(황인성 사무국장)	39
5. 각국의 과거청산 사례와 교훈(조용환 변호사)	49
6.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차병직 변호사)	79
7. 성희롱 예방교육(두정효 강사)	89
8. 조사기법 및 조사서류작성(신현덕 연구관)	95

특 강

인간의 존엄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

양 승 규 위원장

인간의 존엄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

I. 머리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민주국가의 기본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고 보호하여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남북분단으로 인한 체재의 정비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특히 민주헌정질서를 짓밟고 들어선 군사정권은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그에 항거한 민주인사에 대한 죽음을 초래했다. 게다가 그 죽음의 원인에 의문이 제기되는 의문사를 양산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공권력의 개입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유족들이 한데 모여 그 진상을 밝혀 원혼을 달래고자 10여년에 걸쳐 희생을 바치고, 422일이라는 긴 나날을 국회 앞 농성으로 얻어진 법이 이른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권력이 개입되어 고문을 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은 반인륜적인 국가의 범죄이고, 그 진실을 밝혀 다시는 그러한 죄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다.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그 희생자나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고 진정한 화해를 함으로써 보다 밝은 내일을 기약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도 깊다 할 수 있다.

II.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1. 인간의 존엄성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신비체이고, 작은 우주이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삶뿐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격체이다. 여기서 인간은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성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 인격을 갖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존엄하고,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인간의 기본적 권리

인권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어느 나라나 전제군주시대에는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어 왔고, 1215년의 영국의 Magna Carta라는 권리장전은 國王의 권력에 대한 시민의 권리, 자유의 보장의 기초를 이루었다. 1789년 프랑스 시민 혁명은 인간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牧民心書에는 愛民六條 1. 어른공경(養老), 2. 어린이사랑(慈幼), 3.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기(賑窮)－홀아비, 과부, 고아, 의지할 곳 없는 노인(鰥, 寡, 孤, 獨), 4. 상사를 돋기(哀喪), 5. 환자의 구호(寢疾) 6. 재해에 대한 구조(救災)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사상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948년 12월 10일 UN에서 채택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다”고 선언하고, 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의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兄弟愛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사상은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의 기본이념으로 되었고, 각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성, 제12조이하에서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천부적인 인권의 보장을 확인한 것으로 국가의 공권력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인간본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이다. 여기서 인간의 권리의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은 나만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로써 사람은 누구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해방 이후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부터 이어진 인권상황은 한심스러웠다. 이른바 동백림사건이나 1973년 日本에서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 등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국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행위이고, 지난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이른바 시국사건관련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가혹한 고문을 가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은 사회민주화의 현상과 더불어 이른바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난 날의 타성을 완전히 불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좀더 국민이나 국가가 다 같이 사람의 존엄과 인간중심의 의식을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을 학대하는 고문은 고문을 당하는 사람보다도 고문을 하는 사람을 더 오염시키는 행위이고, 이러한 고문 등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자살로 꾸민 행위는 인륜을 거스르는 범죄행위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보장과는 달리 정통성 없는 과거 군사정권은 국민을 억압으로 다스리고, 반대자를 사건의 조작 또는 불법연행 등으로 가혹하게 다루어 인권을 침해한 사실들이 보고되고 있다. 1986년의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 사건, 부천서의 성고문사건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고, 19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근안과 같은 고문기술자를 국가가 길렀음은 우리의 수치이다.

III. 위원회의 역할

1. 위원회의 출범과 그 성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법률 제6,170호로 2000. 1. 15. 제정공포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위원 9명을 10월 17일에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임무로 부여받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부분적이기는 하나 과거사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의 죽음과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몸바쳐온 유가족 여러분의 피나는 투쟁으로 얻어진 기구이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단순히 법에 의하여 조직된 하나의 국가기관이라 보기보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 이 민족이 새로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소명을 띠고 있는 신성한 기관이라 할 것이다.

法을 통한 역사적 규명을 목표로 신성한 기관

2.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한마디로 역사의 진실규명에 있다. 진실을 밝혀야 역사가 바로 선다는 명제는 하나의 공리이다. 해방 후 이른바 「반민특위」 활동이 무산되어 일제에 붙어 민족을 판 사람들이 행세하도록 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흐리게 하였다. 이것은 제2차대전 후 드골이 비시정권에서 나치에 협력한 자를 철저히 가려 그 책임을 물은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몫을 챙기는

사람이 행세하는 사회로 전락하여 총체적인 부패사회로 전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 위원회의 출범은 참으로 우리 민족사에서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저질러진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민족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신성한 작업이다.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반드시 그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끝까지 색출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국가는 반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고 밝히지 않는 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공소시효의 제약을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행하는 의문사의 사인규명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잘못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중점이 있고,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제33조는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문사에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 그 비밀을 털어놓아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 때에는 그 형의 면제뿐 아니라 그 동안 쌓였던 정신적인 번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역사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로서 추대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3. 조사관의 임무와 자세

위원회의 임무는 조사관의 활동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우리 위원회의 핵심 직원은 조사관이고, 의문사 관련 당사자는 물론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분이 바로 조사관이다. 그

리하여 조사관이 먼저 역사의 진실을 밝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끝까지 그 진실을 밝혀 우리 후손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짜꺼기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의문사진상규명법은 위원회에 조사권을 비롯하여 자료제출요구권, 실지 조사권, 동행명령권 등 제한적인 권한을 주고 강제수사권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 밖에 없는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의 진상규명은 위원회의 도덕성과 과거청산의 역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그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우리 역사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위원회의 조사관은 각 기관에서 파견된 수사관과民間에서 전문요원으로 선출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과거의 경력이나 성향이 각각 다르다. 여기에서 조사요원이 각기 자기 소속기관이나 운동권의 이기주의 또는 공명심을 앞세우게 되면 엄청난 파열음이 생겨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에는 여러 가지 흠이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조사관 여러분은 자신의 출신이 어디냐를 떠나서 편견을 버리고 오로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객관적인 조사에 임할 때에 우리 역사의 물줄기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였든 각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든 이제는 의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인 소명을 띠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궁지를 가지고 서로의 불신을 씻고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조사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히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10년 또는 20여년을 지난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조사활동에는 많은 장애가 따를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심없이 최선을 다할 때 그 진상이 하나하나 벗겨질 것이다. 모든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우리가 그 소임을 다하고자 애쓸 때 우리를 성원해 주는 국민이 지켜주고 하느님의 도움이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위원회는 여러분의 조사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 조사관 여러분을 돋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위원장인 저 자신은 여러분의 착실한 심부름꾼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방파제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IV. 맷 는 말

과거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양산한 의문사는 왜곡된 현대사의 비극적인 상징이다.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음은 역사적 교훈이다.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와 그 유족의 한을 푸는 것은 물론 역사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단초를 만드는 신성한 작업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의문사에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스스로 그 비밀을 털어놓아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여 새 역사의 창조에 공헌하고, 우리 위원회는 그 진상을 밝혀 더 이상 인권의 침해가 없는 나라의 초석을 가꾸도록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원회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그 신성한 의무를 일깨우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의 원칙과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서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역사적 교훈을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로 그 임무에 충실히 한다.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비록 관련당사자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법 의 학

이 윤 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법 의 학 소 개

▶ 법의학(法醫學)이란?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의학의 분야.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Forensic Medicine: 法廷醫學, 裁判醫學, Legal Medicine: 法律醫學, Medical Jurisprudence: 司法醫學, Rechtsmedizin, gerichtliche Medizin, forensische Medizin)

▶ 법의학의 주요 영역

1.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

- 부검이나 검안 또는 신체 감정으로 손상과 사망 상황을 재구축

2. 법의유전학(Forensic Genetics), 법의혈청학(Forensic Serology): DNA 검사

- 모든 유전자는 생물학적 父와 母로부터 하나씩 유전한다.

- 혈액형, 혈형, HLA, DNA (유전자) 검사

- 개인식별, 친자감정...

- 대상: 혈액, 타액, 정액, 모발, 조직이나 그 혼적

3. 법의독물학(Forensic Toxicology, 재판화학, 법의증독학)

- 약물, 독극물,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화학 물질

- 사망원인이 되는 독극물, 남용약물, 주취 증명, 소사나 가스중독 사망, 기아사, 화재 감식, 페인트나 유리조각, 기타 증거물, 직업병, 환경오염 등

4. 법치의학 (Forensic Odontology, Forensic Dentistry)

- 개인 식별, 신원 확인, 치흔 감정...

5. 의료법학 (Clinical Jurisprudence, 의사법학)

- 의료와 진료의 적정 여부 판정

6. 배상의학 (Compensation Medicine)

- 운동능력, 노동능력, 소득능력의 상실에 따른 장애(impairment), 기능저하(disability), 불이익(handicap)의 평가와 기준 설정

7. 법의정신과학 (Forensic Psychiatry)

- 개인의 법적 책임능력 평가 따위

▶ 검시제도 (檢視制度, SYSTEMS OF POSTMORTEM INVESTIGATION)

1. 전담검시제도 (영미법계): 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따로 둠

- 가. Coroner (檢視官, 檢屍官)
- 나. Medical Examiner (M.E., 法醫官)

2. 겸임검시제도 (대륙법계)

- 경찰이나 검찰이 변사체에 대한 검시 책임
- 부검은 법의전문가를 비롯한 의사에게 의뢰
- 가. 사법검시우선제도
- 나. 행정검시우선제도

▶ 검시 (檢屍, POSTMORTEM EXAMINATION)

1. 사망자 신원 확인

2. 사망이나 손상의 장소

3. 사망이나 손상의 시기

- 보험금 지급, 유산 상속, alibi 증명, 사망시각과 상해시각의 전후 등

4. 손상의 기록

- 종류, 분포, 형태, 원인, 방향, 양태
- 손상 확인 : 치명적 손상, 방어흔(防禦痕, defense mark), 주저흔(躊躇痕, hesitation mark), 주사기(周死期, perimortal) 손상, 사후(死後) 손상 등

5. 사망의 종류 (Manner of death, 법률적 사망원인) 결정

- (1) 병사 (病死: 自然死, natural death)
- (2) 외인사 (外因死: unnatural death, violent death)
 - (a) 자살 (自殺: suicide): *자살하지. 자기멸위.*
 - (b) 타살 (他殺: homicide):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용어.*
 - (c) 사고사 (事故死: accidental death)
- (3) 불상 (undetermined)

6. 사망원인 (Cause of death) 결정

7. 증거물 수집 (Collection of physical evidence)

▶ 외상과 질병

아무리 작은 외상이라도 그것이 질병을 악화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병사라 할지라도 외상이 사망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사망원인 확실성

(1) 제1급: 부검 소견만으로 확실한 경우

- 심근경색 심실 파열, 고혈압성 뇌출혈, 뇌간 출혈, 심한 폐동맥
색전증, 동맥류 파열...

(2) 제2급: 부검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상황 정보와 사후 검사로 확인하는 경우

- 중증 관상동맥경화증처럼 대부분의 병사

(3) 제3급: 부검 소견과 상황을 종합하면 판단할 수 있지만, 사후 검사로 확인하는 경우

- 중등도 관상동맥경화증과 심한 운동

(4) 제4급: 특이적인 부검 소견이 없지만 상황 정보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간질, 감전사...

(5) 제5급: 부검 소견, 상황 정보, 사후 검사 모두 특이적인 근거 없 으며, 추정하는 경우

- (무소견 부검, negative autopsy)

* 가장 훌륭한 부검이란, 예상되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부검이다.

2. 외상과 질병이 공존할 때 사망의 종류 결정

- 외상이 사망과 관련이 있으면 사망의 종류 결정에서 대개 질병보다
우위

① 사고사에서 피해자가 가진 요인은 선행사인이 아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관상동맥경
화증, 추락사에서 간질발작, 폐 전색증에서 관상동맥경화증

② 유발요인 없이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면 유발요인은 선행사인이다. 알코올 중독으로 체위성 질식, 간질 발작으로 목욕통에서 의사

③ 병사에 대한 일시적이고 일상적 유발요인은 선행사인이 아니다. 분노, 공포, 기쁨, 성교, 배변으로 유발한 부정맥이나 고혈압성 뇌출혈

④ 직접사인이 질병이라도 외인이 유발하였으면 외인사이다. 폭행을 당하고 나서 즉시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발증 시기)

⑤ 외상으로 합병증이 생기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외상이 선행사인이다. 두개골 골절 후에 뇌막염이나 폐렴으로 사망 또는 뇌좌상 후 간질로 사망

⑥ 질병으로 급사하는 과정에 생긴 손상은 사망원인이 아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으로 쓰러지면서 부딪쳐 생긴 손상

⑦ 사망원인이 질병이고 손상과 상관없으면 손상이 있어도 선행 사인이 아니다.

교통사고 손상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

3. 외상과 후유장애(사망)의 인과관계

- 원인: 발생원인, 유발요인, 악화요인

① 외력이 당해 질병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이 있다.

② 손상을 받을 당시에는 질병이 없거나, 발증(發症)하지 않았다.

③ 외상과 발증 사이에 시기적으로 밀접하거나 적절한 경과가 있다.

- ④ 외상 말고는 다른 원인이 없다.
- ⑤ 외력은 결과를 일으킬 정도로 상당한 것이다.
- ⑥ 질병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 상처<損傷> 분류

1. 피부의 개방성 [創傷]

- open wound (—創), closed wound (—傷)

2. 원인 물체 [成傷器]

- 가. 둔기(鈍器) 손상 (Blunt Force Injury); 표피박탈(찰과상 포함), 명(挫傷), 裂創
- 나. 예기(銳器) 손상 (Sharp Force Injury); 刺創, 切創, 割創
- 다. 총상(銃傷, 銃創) (Gun-shot Wound)
- 라. 폭발 손상 (Injuries by Explosion)
- 마. 교통사고 손상 (Traffic Injuries)

<둔기 또는 예기 손상의 사망 기전>

- (1) 출혈(bleeding, exsanguination); 급성 출혈로 대개 1200 ~1500 ml 이상
- (2) 기흉, 혈흉, 혈심낭(심장탐포나데), 두개강내 출혈
- (3) 주요 장기의 직접적인 손상; 뇌좌상, 심장좌상 따위
- (4) 감염(infection)

<자해 또는 타해의 감별>

- “타해의 증거는 있으나 자해의 증거는 없다.”
- (1) 손상 위치: 스스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생긴 손상은 타해이다.
- (2) 손상 방향: 여러 개가 평행으로 무리지어 생긴 손상은 자해일 가능성이 크다.
- (3) 손상(치명상) 수: 치명상이 여럿이면 타해이다.
- (4) 주저흔(躊躇痕; hesitation mark): 자해의 특징
 - 치명상에 이르기 전에 생긴 손상
 - 손목, 앞팔, 팔꿈치 앞쪽, 목 옆
 - 얇고, 평행인 여러 개의 절창, 또는 절창 흉터
- (5) 방어흔(防禦痕; defence mark): 타해의 증거
 - 공격을 인식하고, 반사적인 방어로 생긴 손상
 - 손바닥, 손등, 팔의 뒷쪽이나 안쪽, 발바닥
 - 절창, 자창, 총창
- (6) 옷: 옷이 훼손되지 않도록 치웠으면 자해 가능성이 크다.

▶ 교통사고에 관련된 쟁점들

1. 보행자 교통사고

- 보행자 교통사고 여부
- 사고 때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
- 용의 차량이 여럿이면 그 중에서 가해 차량 구별
- 피해자 과실 요인

2. 탑승자 교통사고

- 사고와 손상(질병)의 전후
- 운전자 구별
- 운전자의 사고 유발 요인

3. 사고 후

- 사고 후 처리와 관련된 사망까지 경과
- 손상과 지병(기왕증)의 관여도
- 의료과오 개입
- 장해 판정

▶ 질식의 종류

1. 목눌림 (頸部 壓迫, Strangulation, Compression of Neck)

- 목 혈관을 압박하여 뇌에 저산소증 유발
- 가. 의사(縊死, Hanging)
- 나. 교사(絞死, Ligature strangulation)
- 다. 액사(扼死, Manual strangulation)
- 라. 완교사(腕絞死)

2. 질식(Suffocation)

- 외호흡(대기를 흡입하여 폐포에서 가스교환까지) 장애
- 가. 흡입 공기의 산소 결핍(Environmental asphyxia, Exclusion of oxygen)
- 나. 코와 입 막음(鼻口 閉塞, Smothering)

다. 기도 막힘(氣道閉塞, Choking)

- (1) 이물질, 재갈(Gagging)
- (2) 기도 점막의 부종: 알러지, 염증, 외상
- (3) 체위에 의한 질식(Postural asphyxia)

라. 호흡운동의 장애

- (1) 흉부나 복부 압박(Traumatic or compression asphyxia)
- (2) 기흉(pneumothorax) 또는 혈흉(hemothorax)
- (3) 호흡근육 마비

마. 기도 말단이나 폐포의 폐쇄: 익사, 이물질 흡입

▶ 익사(溺死, Drowning)

1. 법의학적 의의

- 가. 사전 혹은 사후 입수 여부
- 나. 손상의 사전 혹은 사후 생성 여부
- 다. 질병이나 중독 수반 여부

2. 분류

- 가. 수흡성 익사(wet drowning)
- 나. 건성 익사(dry drowning): 약 10%
 - (1) 미주신경 억제 (vagal inhibition)
 - (2) 방어기전으로 인한 폐쇄 (laryngeal spasm)
 - (3) 무의식 상태에서 입수
- 다. 지연성 익사(deferred death from drowning)
 - 구조된 후에 폐부종으로 사망

3. 소견

가. 익사의 소견

- (1) 코와 입의 잘고 흰 거품(froth)
- (2) 점상출혈: 다른 질식사와 비슷
- (3) 기도나 기관지에 점액성 거품, 진흙, 모래
- (4) 폐 (익사폐, 溺死肺)
- (5) 위나 십이지장의 익수
- (6) 호흡근육의 출혈
- (7) 측두골 암석부위(petromastoid) 속 출혈
- (8) 접형동(sphenoid sinus) 안의 익수
- (9) 플랑크톤의 증명
 - 폐에 익수와 같이 흡입된 플랑크톤이 혈액을 따라 전신에 퍼짐
- (10) 긴장성 사후강직(cadaveric spasm): 이물 장악

나. 수중시체의 소견

- (1) 체위: 고개를 숙이고 팔다리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은 기마 자세
- (2) 시체 냉각: 공기보다 20배 정도 빠름
- (3) 시반(lividity): 체위의 변화와 수중의 고른 압력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약함
- (4) 닭살 (아피, 鵝皮, cutis anserina) 형성
- (5) 표모피(漂母皮)형성: bleached wrinkled skin, washer -woman's hand
- (6) 부폐
- (7) 수중 손괴

4. 수중시체의 부양(浮揚, 수면에 떠오름)과 사후경과시간

- 20%~30%는 익사 직후 떠오름
- 인체의 비중: 0.967~1.057 (옷, 부착물 등에 의하여 비중이 달라짐)
- 떠오르는 시기는 물과 몸의 비중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폐 가스의 형성과 관련된 수온, 물의 흐름, 물 깊이, 옷입은 상태에 따라 다름
여름: 2~3 일, 겨울: 몇주~몇개월

▶ 독극물의 치사량

치사량(致死量) 또는 치사농도(致死濃度)란 당해 종(種, species)의 동물이 반 정도 사망하는 독극물의 양 또는 농도를 말한다 (LD50 또는 LC50). 특정 개체는 치사량보다 적은 양에서도 사망할 수 있고, 치사량 보다 높은 양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독극물로 사망하는 예에서 모두 용량의존적(dose dependent)은 아니고, 면역반응이나 과민반응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반응으로 사망하는 예도 많다.

예컨대 페니실린 쇼크는 일반적인 치료 용량에서 치명적인 과민반응을 일으킨 것이고, 헤로인이나 히로뽕 남용에서 일상적인 투여량으로 알 수 없는 기전으로 급성호흡부전이나 악성고열증(高熱症)을 일으켜 사망하는 예도 많다.

▶ 알코올 (Ethanol)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

혈중 농도	증상
- 0.04%	증상 없거나 조금 기분좋음
0.05% - 0.10%	억제감 해소(기분 좋음), 자신 과잉, 주의력 감퇴, 판단력 감소, 음주사고가 많아짐
0.10% - 0.15%	정서불안정, 쉽게 흥분, 판단력 소실, 기억력 감퇴, 졸림, 반사작용 느려짐, 음주사고 매우 많음
0.15% - 0.30%	조화운동 소실, 갈짓자결음, 심한 정서불안정, 과장된 감정 표현, 어지러움, 통각반응 감퇴, 언어 불명료, 지남력 상실
0.30% - 0.40%	혼미, 현저한 운동실조, 반사작용 소실, 깊고 느린 호흡, 체온저하
0.40% 이상	감각소실, 혼수, 사망

<사후 알코올 농도>

- 가. 부폐: 호기성 환경에서 0.05%, 혐기성 환경에서 0.20%까지
 - 0.20% 이상이면 술 마신 것으로 추정
 - 술에는 없는 propanol, methanol, butanol이 검출되는지로 확인
- 나. 위 안에 있는 알코올이 확산하여 심장혈액도 0.05% - 0.10%까지
 - 말초혈액으로는 거의 확산하지 않음.

공직윤리

문덕형 상임위원

공직윤리

I. 공무원의 개념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광의 : 국가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
- 협의 :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

1. 공무원의 본질(특별권력관계설 → 공법상 근무고용관계설)

-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 법적으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구성자로 특별한 법적지위(권리, 의무, 책임)를 갖는다.

2. 제도상 공무원의 기본원칙

- 민주적 공무원제 : 국민에의 봉사, 국민에 대한 책임, 공무담임의 기회균등
- 직업공무원제 :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성적주의

3. 공무원의 윤리헌장은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신조이다

- 1980년에 제정선포된 『공무원의 윤리헌장』은 공무원의 직업윤리 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이 어떤 직업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나타냄
 - ① 역사의 주체
 - ② 민족의 선봉
 - ③ 국가건설의 역군
 - ④ 국민의 귀감
 - ⑤ 겨레의 기수라는 행동지표와 5개항의 공무원의 신조를 담고 있음

공무원의 신조

하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하나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하나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하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II. 공무원의 임용과 신분관리는?

1. 공무원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나?

공무원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특수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반면, 일반국민에게는 없는 권리를 가짐

* 신분상의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및 재산상의 권리, 실비변상 청구권 등이 있다.

가. 신분보장

(1) 의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은 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적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의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제도에는 징계, 직위해제, 정년제도, 보직 등이 있다.

(2) 신분보장의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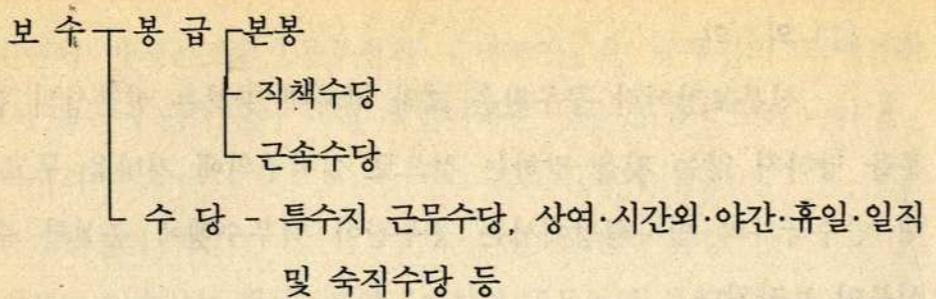
-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재산상의 권리

(1) 의의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댓가로써 법령에서 정한 금전적인 보상(보수청구권, 연금권, 실비보상청구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동시에 공무원의 생활보장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공무원의 보수체계



(3) 기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구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사후보장적 담보로 소청, 행정소송, 고충심사 청구권을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구제와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꽤하고 있다.

2. 공무원의 윤리(의무)는?

가. 의 의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켜야할 「가치기준」, 「행동규범」을 말하며, 공무원의 행동규범, 근무규율은 ①국가의 기본적인 정치이념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차원의 의무, ②법적의무, ③공무원의 직업윤리에 의한 자율적 규제로 볼 수 있고 이 곳에서는 헌법과 법적의무를 중심으로 특히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나. 공무원 의무의 관계법령

(1)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직장협의회('99년부터)

(3)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된다.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궁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 (4)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5)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6)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7)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 (8)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9)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무원의 복무

가. 의 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의무 조항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이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복무에 대한 법·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 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다. 파견근무자

임용권자는 당해조직외에서 직무수행,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관에 파견근무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책임 및 의무이행(복무 등) 확보를 위해 이의 지휘감독 권한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의뢰케되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다.

III. 공무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1. 의 의

가. 공무원의 책임이란

넓게는 행정조직이 국민에 대해 의무를 지는 행정책임이며, 좁게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각자가 조직내·외적으로 겨야 할 ①도덕적 책임 ②법적 책임 ③재량적 책임 ④정치적 책임 ⑤직업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법적책임 확보를 위한 징계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행정상의 책임(징계책임, 변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 책임

나. 책임확보 수단으로써의 징계

공무원은 법령 또는 규칙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품위손상시 징계를 받아야 할 책임이 따르며,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2. 관련법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IV.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반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정직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	감봉	견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V. 인정받는 직장인의 자세

1. 원만한 인간관계

- 누구에게나 항상 먼저 인사하고 경어를 쓰도록 한다.
- 의욕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한다.
-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는 자기 주장을 양보하는 아량을 지닌다.
- 여성직원들은 직장 미화에 솔선하는 것이 좋다.
- 충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깊이 반성하여 그런일이 없도록 한다.
- 상사는 항상 부하 직원들에 대한 상담자 역할을 해준다

2. 집무태도

- 직장의 근무 규정을 잘 지킨다.
- 자기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적인 일은 직장에서 하지 않는다.
- 직장의 기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 직장의 일에 대한 건의나 요망 사항은 반드시 계통을 밟아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 항상 단정한 용모와 바른 자세로 집무한다.
- 까다로운 일이라도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선배에게 물거나 잘 연구하여 처리한다.

○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행선지와 돌아올 예정시간을 옆사람에게 알린다.

○ 가정이나 외부의 일로 인한 나쁜 기분이 집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3. 직장생활의 3원칙

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

- 주위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직장생활 에티켓 제1원칙이다.

②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약속한 것을 꼭 실행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에티켓이다.

③ 능률을 생각한다.

- 직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완벽하게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의문사 사건의 이해

황 인 성 사무국장

의문사 사건의 이해

I. 왜 의문사인가

1. 의문사(疑問死).

국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이처럼 회자된 단어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기관으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의문사의 정의 또한 학계에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단체에서는 의문사의 정의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의문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인 자체의 요인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외부의 작용²⁾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말하며, 외부의 요인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죽음에 이른 과정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³⁾를 말한다.'

왜 의문사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이 사망하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개중에는 돌연사와 같이 멀쩡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조사하면 그 사인이 밝혀진다. 그러나 조사를 하였더라도 사인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제기된 경우들이 있다. 조사 주체에 대한 불신과 조사 과정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1) 노쇠, 질병, 자살 등의 범주가 이에 해당하나 질병이나 자살의 경우라도 살해를 목적으로 한 외부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의문사의 범주에 포함

2) 대개의 경우 살인이 해당

3)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사고의 목적으로 살해를 위장한 경우나, 살해의 경우에도 배후 및 살해 동기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들이 이런 의문사의 유형들이다. 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를 해 나가면서 하나 하나 그 의혹이 풀리고 진실이 규명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바와 같이 자살이나 사고사로 밝혀지는 결과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사인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그 자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원회에 아직까지 사건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협과 추모연대에서 제기해온 사건들을 중심으로 왜 의문사인가를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2. 법의학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들의 대표적인 사례

-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형태로 사망하여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소총으로 앞이마 윗 부분을 쏘아 탄두가 뒤통수 아랫부분으로 관통하여 사망하였는데 사입구는 크고 사출구는 매우 작게 나타났으나 자살로 발표됨. <노철승 사건>
- M16소총으로 좌측 가슴을 수평으로 쏘아 사망에 이르지 않자 다시 우측 가슴을 쏘았고 다시 두부를 쏘아 자살. <허원근 사건>
- M16소총으로 우측 관자놀이를 쏘아 자살. <이이동 사건>
- 시멘트 덩이를 몸에 세 군데 묶고 협착해 나가 자살. <김성수 사건>
- 온 몸이 포승줄로 묶인 채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단순 익사로 발표됨. <이덕인 사건>

- 안경알이 깨져 눈에 박히고 앞니가 네 개나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M16 소총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나 총은 난로가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음. <이승삼 사건>
- 목매인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색흔이 목 뒤까지 일직선으로 나 있으며 정 중앙에 매듭자국이 뚜렷이 나타나 있음. <박필호 사건> 등

3. 사망 전후 기관과의 관계로 인하여 사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인 사례들

- 자살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사건 전후 기관과의 관계에서 사망하여 의혹이 제기됨.
- 중앙정보부에서 조사 받던 중 사망. <최종길 사건>
- 보안사에서 조사 받다 혼수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임기윤 사건>
- 수배도중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우종원 사건>
- 대공파에 연행된 뒤 동굴에서 목매인 시체로 발견됨. <신호수 사건>
-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뒤 사망. <고정희 사건>
- 총학생회장이 8월 15일 거문도에서 의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현장에 안기부 직원이 있었음. <이내창 사건>
- 수배 도중 경찰에 쫓기던 중 실종되었으나 수원지에서 떠오름. <이철규 사건>
- 기무사의 감시를 받던 중 사망. <김영환 사건>
- 안기부 직원의 회유를 받던 중 병원에서 추락 사망. <박창수 사건>

- 강제징집 된 뒤 사망. <정성희, 김두황, 최온순, 한영현, 이윤성 사건>
- 보안사의 취조를 받은 뒤 사망. <한희철 사건>
- 보안사의 폭력 공작이 있던 중 사망. <김용권 사건>
- 보안대의 질책을 받고 사망. <최우혁 사건>
- 경찰에 연행된 뒤 사망 <김상원, 문영수 사건> 등

4. 사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들

- 사망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여 의혹을 가중시킴.
- 사건 현장을 인멸함. <대부분의 사건들>
- 시신의 상태를 온전히 보여주지 않음. <정성희, 박상구 등의 사건들>
- 서둘러 화장을 종용함. <대부분의 군 관련 사건들>
- 부검을 실시하지 않음. <80년대 후반 이전의 우종원, 박상구 등의 사례>
- 강제 부검을 실시함. <80년대 후반 이후의 박창수, 이덕인 등의 사례>
- 중요 소지품 등을 발견하는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발견하지 못 함. <이철규, 이내창 등의 사례>
- 행렬병자로 위장하여 가족이 찾을 수 없도록 만듬. <김상원, 문영수 사례>

5. 사건 조사 주체에 대한 불신

-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 사건 조사를 하였고, 사건 전후 기관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민간의 참여를 가로막아 그 의혹을 더하였음.

6. 재 조사 목살

- 사건 발생 기관, 상급 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 당, 국회, 청와대 등 온갖 곳에 여러 해에 걸쳐 수 차례씩 재조사를 진정 하였으나 목살됨.

II. 의문사 사건 개요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요구되어 왔던 의문사 사건들은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과 추모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에서 집계한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44건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사인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4건의 경우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422일 동안 특별법을 제정토록 요구한 끝에 정치권과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들 사건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전국군폭력유가족협의회에 소속된 군 일반 의문사 사건들과 개별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의문사 사건들이 있다.

III. 의문사 사건의 발생 유형⁴⁾

1.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서의 의문사

해방 이후 정적 제거의 한 수단으로 암살한 예로는 45년 12월 고하 송진우의 암살, 47년 7월 몽양 여운형의 암살, 47년 12월 설산 장덕수의 암살, 49년 6월 백범 김구의 암살 등이 있다. 정적에 대한 암살은 그 본질적 부도덕성으로 인해 살해 목적과 배후를 철저히 은폐시킬 뿐만 아니라 왜곡시키기까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정적 제거 수단으로서의 의문사 유형으로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사건으로는 박정권 때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와 김형욱 사건 등이 있다.

2. 고문의 결과로서의 의문사

유가협과 추모연대에서 집계한 44건의 의문의 죽음을 중 가장 많은 사건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살해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국가공권력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도록 고문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자,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 은폐시킨 경우들이라 추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확인된 사례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있으며, 73년에 중앙정보부에서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 80년 보안사에 끌려 간 뒤 사망한 임기윤 목사 사건, 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81년부터 84년까지 자행한 강제징집한 학생들에 대한 녹화사업 중 의문사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정성희, 김두황, 이윤성, 한영현, 최온순, 한희철 사건들과, 공식적인 녹화사업 중단 이후 발생한 김용권 사건, 최우혁 사건 등 다수의 군

관련 사건들, 민추위 관련 수배자 우종원 사건, 서울대생 김성수 사건, 인천 연안가스 노동자 신호수 사건, 조선대 민주조선 편집장 이철규 사건 등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국가 권력이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점이다.

3. 조직적인 범행 결과로서의 의문사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87년 군대에서 학생 시위 옹호 발언을 하다가 의문사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이이동 사건, 88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거문도 앞 바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내창 사건, 노동운동 과정에서 테러 당한 인천 협신사 이재호 사건, 속초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으로 재단 측의 끊임없는 협박을 받던 중 의문사한 김용갑 사건,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 박창수 사건, 인천 아암도 앞 바다에서 노점에서 하다 철거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덕인 사건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의 경우는 테러를 목적으로 폭행을 하다 살해되자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시킨 경우와, 집요한 공작 중에 회유되지 않자 이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살해하고 이를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시킨 경우가 있을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4) 이 발생 유형은 44건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의문사의 발생 배경으로 제기되어온 상태로 다루었고, 위원회에서는 그 의혹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각국의 과거청산 사례와 교훈

조 용 환 변호사

과거 인권침해 조사의 경험과 교훈

I. 서 론

1980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지배해 온 가장 큰 주제는 과거청산의 문제, 즉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를 민주정부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70년대 초 그리스와 스페인의 우익 군사정권의 붕괴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이 80년대 초 남미를 거쳐 아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산되었다. 민주주의를 향하여 “피와 땀의 계곡”¹⁾을 건너는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숙명적으로 직면하게 된 과거청산의 문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경험, 고민과 연구의 결과를 자양분으로 삼아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문제의식을 깊게 하는 동시에 다루는 영역의 폭을 넓혀 오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특히 80년대 이후 더러운 전쟁을 수행한 남미의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자기사면법들을 제정해 놓고 퇴진한 상황에서 과거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쿠데타의 위협으로 대응하는 군부세력의 반발에 직면한 민주정부들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국가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유린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는가, 혹은 그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진상의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소박한 질문에서 시작한 논쟁은 곧 국가는 누구에 대하여

1) 박효종, ‘민주화와 합리적 선택: 법률적 적실성과 쟁점들을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28輯 1號, 307쪽.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가, 그 책임과 의무를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경우에 해소되거나 면제 혹은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거청산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 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적인 차원의 질문에 선형적으로 제시된 법기술적 차원의 해답을 내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법논리들을 새로운 법이론의 체계로 대체해가면서 발전해 온 담론들을 결국 개인과 사회, 국가권력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의 변화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혹은 문자 그대로 야수와도 같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순화할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고민은 곧 민주화 이행을 촉진하고 민주제도를 뿌리내리게 하며 인권보호체제(rights-protective regime)를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시적인 과정²⁾의 핵심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로 과거청산 문제를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몇 나라의 과거인권침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³⁾의 활동과정과 결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한국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⁴⁾가 참고삼을 만한 일

2)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stview Press, 146쪽.

3) 과거청산을 담당하는 기구에 관하여 통일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청산 과정을 시작한 나라의 특성과 이념을 반영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진상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험을 따라 진실화해위원회(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이름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4)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조문으로만 보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의 특수한 영역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맡는 기구일 뿐, 전반적인 과거청산을 통하여 민주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부

반적인 정보와 교훈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II. 과거 인권침해 조사: “인간의 얼굴을 한 국가 건설”

1.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가?

(1) 일반적인 논의들

- ①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되살아난다.
- ②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 ③ 화해와 제도개혁, 역사반복의 예방 가능성
- ④ 피해자를 위한 치료과정
- ⑤ 가해자의 치료문제

(2)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적용. 국가권력의 인간화 혹은 인간의 얼굴을 한 국가건설(giving the state a human face)⁵⁾

2.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1) 각국의 경험들

- ① 칠레,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 “실종(disappearances)”
-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 “severe ill treatment”

여전지 못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고민과 경험들이 과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걸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5) Wilhelm Verwoerd, 'Justice after Apartheid? Reflections on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aper delivered at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thics and Development, "Globalization, self-determination and justice in development", Madras, India, 2-9 January 1997.

③ 엘살바도르 : “사회에 대한 영향이 커서 공중이 그에 대하여 진실을 알 필요가 시급한 심각한 폭력행위(serious acts of violence)”

④ International Fact-Finding Commission by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 “crime of genocide, serious violations of laws and customs applicable in both international and internal armed conflicts, crimes against humanity including enforced disappearances, extra-legal executions and act of torture”

(2) 평가

① 과거의 모든 인권침해를 남김없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은 비록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데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인권유린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되는 문제의 선정은 구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양상과 그 사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되 인권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조사대상이 되는 영역의 선정과정과 결과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유형의 인권침해의 범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마비되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불처벌의 감정(sense of impunity)이 만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 인권의 원칙을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제도의 발전과 공고화에 필수적인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

III. 과거청산의 목표와 규범적 문제들

1. 과거청산의 일반적 목표

(1) 과거 역사의 공적 확인과 인정

일반적으로 과거청산의 목표로 과거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의 사실조사(fact-finding)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실종자의 생존 또는 사망여부 확인과 그 원인 및 상황에 대한 사실적 조사가 의미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반 대중은 과거 정권아래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실상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acknowledgement)하게 하는 것을 중심적인 과제로 파악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인정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인식이 변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구조개혁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치유와 화해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피해자 지원과 국민적 화해,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 개인과 집단의 재활 문제

(3) 인권보호 및 과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적, 구조적 개혁

(4) 인권침해자 확인, 책임추궁

2. 문제점

- (1) 과거청산의 일반적인 목표들은 하나 하나를 나누어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바람직하고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 사이에는 중충적인 상호의존, 중복 및 모순, 충돌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모든 목표를 한꺼번에 모순없이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가치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가치들 사이에 선험적으로 우열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어진 사회의 상황과 인권침해의 양상,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고려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과거청산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 과거지향적 관점(backward-looking)과 미래지향적 관점(forward-looking)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를 토대로 한 민주적 개혁을 통하여 인권을 유린한 국가기구와 관료들의 성격을 바꾸고 민주적 국가제도와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과거범죄의 양상 및 이행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역관계에 따라서 과거청산의 목표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라마다 국제법적인 의무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창조적인 대처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 (4) 과거문제를 다루는 데는 목표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방법론과 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한 과거범죄의 처벌 차원에서만 다루거나 하나의 기구를 통하여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며 일반적으로 과거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기초와 처벌을 한 쪽

에, 전면적인 사면을 다른 한 쪽에 놓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3.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

- (1) 일반적으로 국가는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가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모든 정부는 “국가의 범죄”로 벌어진 인권유린의 사실을 확인하여 공적으로 알리고 국가의 역사에 편입할 의무는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과거청산에 관한 모든 논의는 피해자와 사회의 “진실을 알 권리”,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진실을 기억할 의무”에서 출발한다⁶⁾.
- (2) 정책의 정당성 요건
- i) 진실의 완전한 공개 및 공적인 인정
 - ① 공적으로 확인된 국가의 역사를 구성, 권위있는 진상 확인
 - ② 중대한 인권침해 조사 / 피해자 생사확인 위해 덜 중요한 침해 조사 회생 가능

6) Question of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and political), Revised final report prepared by Mr.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decision 1996/119, UN Doc. E/CN.4/Sub.2/1997/20/Rev.1, 2 October 1997, para. 17. 이 보고서의 Annex II로 붙어 있는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제1조는 “진실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the inalienable right to the truth)”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그 환경, 그리고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통하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 양도할 수 없는 알 권리를 가진다. 진실에 대한 권리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행사는 장래 이러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원칙 제2조는 압제의 역사를 기억할 국가의 의무를, 제3조는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제4조는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비사법적인 조사위원회(extrajudicial commissions of inquiry)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③ 진실은폐를 전제로 한 보상 불가능

④ 인정을 통한 정의의 성취(justice as acknowledgement)는 진실의 완전한 공개(full disclosure)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화해의 가능성은 있다.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승인이 정의의 기초를 형성하며, 현재와 미래를 다시 건설하는데 과거의 기억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ii)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거청산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iii) 인권의 원칙

과거청산은 내용과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국제법에 정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 딜레마를 안겨주기도 하는 인권의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나 가해자에 대해서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방법론의 다양성⁷⁾

과거청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의 완전한 조사와 공개를 하한선으로 하여, 나라의 사정과 인권침해의 현상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이행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국가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7) 중대한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방법과 국제법적 근거는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inal report submitted by Mr.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UN Doc. E/CN.4/Sub.2/1993/8, 2 July 1993, 특히 para. 137 참조.

i) 피해회복 (reparative measures)

-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

① 금전적 배상, 경제적 지원

② 피해자의 치료, 교육

③ 피해자의 원상회복

④ 명예회복 (교과서 수록, 기념비, 묘지, 공원 설치)

⑤ 피해의 공식적 인정과 사과

ii) 재발방지 또는 예방 (preventive measures other than punishment or clemency)

- 국가적 화해와 재발방지 목적의 충돌가능성 (처벌에 의한 예방/관용에 의한 예방)

① 인권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강화

② 국가기구 개혁 (사법부, 수사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의 개혁, 민주적 감독)

③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정당화해 온 특정 이념과 이론의 폐기

④ 인권교육

⑤ 가해자의 치료

iii) 가해자 처벌 (punishment)

iv) 관용 또는 사면 (clemency/ amnesty)

v) 평가

과거청산의 목표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표들 사이에 한편으로 상호보완 및 의존관계가 있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모순,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론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예컨대, 최근 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TRC) 방식 역시 과거청산을 위한 여러 장치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TRC, HRC, Gender Commission, Land Claims Court, Youth Commission, 교육체제의 개혁, 재건 및 개발계획들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과거 인권침해 범죄를 다루는 국가의 재량에 대한 한계

과거청산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 국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또한 무제한의 것은 아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가해자의 처벌과 사면 또는 관용의 경우 국가의 재량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i) 처벌의 한계

조사 및 처벌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른 가해자의 인권존중과 보호

ii) 관용 또는 사면의 한계

①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특정한 범죄에 대한 사면이나 관용의 금지

② 진실발견 포기 금지

③ 과거정권에 의한 자기사면 금지: 민주정부에 의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면

iii) 상관의 명령에 대한 직무상 복종 (superior orders / due obedience)의 문제

이차대전 전범재판 이후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자동적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는 문명국에 확립되어 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른 하수인보다는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국민적 화해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하급자들의 범죄에 대한 사면의 여지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달리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특히 범죄의 내용과 수법에서 특히 잔인한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IV. 과거청산의 형태와 결정요인

1. 과거 체제의 성격

- (1) 군사정권 : 남미, 아프리카 제국, 인도네시아
- (2) 인종차별정권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 공산정권 : 구 소련, 동유럽,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 (4) 기타 (민간독재정권 등) : 필리핀
- (5) 내전 : 스리랑카, 캄보디아, 루완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
- (6) 내전 및 국제전 : 구 유고 연방
- (7) 식민지배, 군사점령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 : 동티모르, 북아일랜드

2. 인권침해 기간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 (1) 남미 - 민주정치의 배경을 가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군사정권의 집중적인 인권침해, 정권과 사회의 광범위한 이반 현상
- (2) 소련 등 공산권 - 민주정치의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전체주의 통치, 사회와 문화 전체가 체제에 동화, 정부와 사적 영역을 재건설하는 문제가 대두됨.